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의 기준·대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 신설(안 제36조, 별표5)
- 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의 대상·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대상·방법 및 기준 등 신설(안 제38조, 별표6)
-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대상·절차 등 신설(안 제39조)

- 마.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취소 대상 등 규정(안 제40조, 별표7)
- 바. 자동차제작자등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 등
규정(안 제15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자율주행시스템 변경 시
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45조)
- 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52조, 별표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43조
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으로 한다.

제5장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6장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하
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
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이하 “성능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성능인증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실시한다.

1.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형식확인”이라 한다)

2.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

④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신청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 결과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형식확인을 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

으로 제작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3항제1호의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가능영역의 확대

2.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변경(다만,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변경은 제외한다)

3. 자율주행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고속도의 상향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변경신청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변경인증의 방법, 제출서류 보완요청,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변경인증”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형식확인을 하는 경우 성능인증 기준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한 형식확인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형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38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제6호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서 사본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행계획서

가. 운행 목적

나. 운행 용도

다. 운행예정구역의 지리적·시간적 조건 및 기상·통신환경 등을 고려한 운행 범위

라. 운행최고속도

마. 법 제43조에 따른 책무의 이행계획

바.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적합성 승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2.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에서의 운행에 필요한 성능을 확인하는 현장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교통안전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가 별표 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4항제2호의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일 것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가 같을 것

⑧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의 확대(지리적·시간적 조건 및 기상·통신환경 등을 포함한다)
3.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최고속도의 상향 조정
4.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변경
5.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 장치의 변경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2. 제38조제7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
3.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밖에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합성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승인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2. 제38조제7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
3. 신고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별표 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0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하였을 경우(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고기록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보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42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운행 조치)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운행 조치를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것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 및 관계 자료의 숙지
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안전점검 및 정비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마.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다른 도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3.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를 마련할 것(승객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

5. 제4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할 것(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8.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9.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저장용량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할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에 필요한 기술지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주행거리 이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에 발생한 하자의 무상수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4.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점검, 정비,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 매뉴얼, 고장 진단기 및 제작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무상제공

제4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조치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
 2.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사고기록 장치에 저장된 정보
-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2.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우
3.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장치의 변경으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4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변경 이후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해당 변경 이후에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할 것
3. 변경 전·후 해당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할 것
4. 해당 변경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훼손, 손실 및 위조·변조를 방지할 것

③ 자동차제작자들은 법 제4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이력과 그 변경내용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은 변경하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고장상태, 운행가능영역 확인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자가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정기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제47조(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중전의 제36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중전의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중전의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제36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의 접수
2. 제36조제7항 및 제37조제7항에 따른 제원의 입력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변경신청서의 접수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신청서의 접수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의 접수
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 접수 및 검사의 실시
7.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제49조(중전의 제36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중전의 제36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제2항 각 호”를 “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를 “제3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중전의 제37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제51조(중전의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을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8.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

제39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39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5를 별표 8로 하고, 별표 8(중전의 별표 5) 중 “(제39조 관련)”을 “(제5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5) 제1호라목 단서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3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35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250	350	500
라. 법 제35조제4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250	350	500
마.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경우			
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1)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500만원
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	법 제55조		

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3항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60만원		
아.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3) 비상대응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4)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 비상대응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100만원		
6)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 자율주행자동차에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 않은 경우				
8)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9)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데이터 저장용량이 부족함에도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3호	500만원		

부 칙

[별표 5]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세목(細目)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은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한 사항 중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체 분석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 3) 성능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을 것
- 4)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에서 운행한 것에 한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5) 4)에 따른 운행 중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또는 교통사고가 없었을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결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세목의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 1) 자율주행자동차는 모든 주행 상황에서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제반 법령에 따라 운행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 3)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 고장 및 운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킹 등 사이버보안 관련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3)에 따라 수립된 위험 대책이 해당 위험에 대응 할 수 있음을 자동자체작자등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5) 자율주행시스템 이외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6개월 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6)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항목	구조 및 장치 기준
1) 표시장치	가) 탑승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나) 탑승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위험최소화운행 또는 비상운행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차로변경을 시작하는 경우 차로변경의 시작을 탑승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장치를 갖출 것
2) 경고장치	가) 운행 중 고장, 교통사고 등 그 밖의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탑승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나) 가)에 따른 위험상황이 존재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조종장치	가)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작동,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상상태인 경우에만 작동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모든 문(창문은 제외한다)이 닫힌 상태인 경우에만 작동하는 장치를 갖출 것
4) 탑승자 안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가 좌석에 착석한 경우 좌석안전띠 착용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를 갖출 것
5) 통신장치	가) 안전관리자와 즉시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통신 장치를 갖출 것
	나) 양방향 통신장치의 작동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것
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가) 제44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갖출 것
	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는 OBD 단자 등

	표준화된 통신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7) 영상기록장치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내·외부에서 운행상황(사고 등 위험 상황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갖출 것
	나)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내부 상황을 자율주행자동차의 내·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갖출 것
8) 사고기록장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갖출 것
9) 비상정지장치	가) 사람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내부에 비상정지장치를 갖출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 외부에 비상정지장치를 갖출 것
	다)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갖출 것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기준

항목	성능기준
1) 운행가능영역	가)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조건 등 운행가능영역의 각 요건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적합한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운행가능영역을 벗어났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위험최소화운행을 시작할 것
2) 차로유지	가) 차로유지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인 차선 바깥쪽 경계를 넘지 않을 것
	나) 주행차로 연결차로의 다른 도로 이용자를 감지하여 속도 및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
3) 속도제어	가) 지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행 중인 도로의 호우, 강설 등 환경조건에 따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것
4) 전방최소안전거리	가) 자율주행자동차가 정지상태가 아닌 경우 전방의 자동차와의 거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방 최소안전거리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인 차로의 전방에 정지하고 있는 다른 도로 이용자가 있거나 차로가 차단된 경우 안전

	하계 차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도로 이용자 또는 차로 차단 지점의 후방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을 것
5) 차로변경	가) 자율주행자동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다른 차로로 변경을 완료한 이후 방향지시등을 해제시켜 차로 변경이 종료되도록 할 것
	나) 차로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작할 것
	다) 차로변경은 다른 자동차 또는 도로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차로변경으로 인해 다른 자동차 또는 도로 이용자 및 도로 구조물과의 충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6) 위험최소화 운행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이 위험최소화운행을 스스로 수행할 것
	나) 위험최소화운행의 시작과 동시에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시킬 것
7) 비상운행	가) 임박한 충돌위험이 발생한 경우 비상운행 기능이 시작될 것
	나) 위험상황이 해소되거나 안전관리자의 의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비상운행 기능이 해제될 것
8) 고장감지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경고할 것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위험최소화 운행을 시작할 것. 다만, 해당 고장에 대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위험최소화운행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위험최소화운행”이란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동차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거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가능영역을 벗어났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탑승자 및 다른 도로이용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2) “비상운행”이란 임박한 충돌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충돌을 회피하거나 충돌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기준,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의 기준(제38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41조제1항 따라 적합성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세목(細目)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법 제41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 2) 법 제43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 3) 적합성 승인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81조제7호의2에 따른 벌칙 부과처분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을 것
- 4) 운행예정구역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사전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 5) 4)에 따른 운행 중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또는 교통사고가 없었을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 조사결과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 작동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적합성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세목을 포함하는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운행예정구역의 운행환경 및 노선 설명서
- 2) 안전관리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및 역할
- 3)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 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조건 등 운행가능영역의 각 요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 5)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 장치 설치 계획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기준

항목	승인기준
1) 운행가능영역 확인	가) 운행하려는 목적·용도 및 범위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과 부합할 것

	나) 운행예정구역의 도로 유형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포함될 것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무선통신장치와 운행예정구역에 설치된 무선설비가 상호 호환될 것
2) 도로운행 적합성	가) 운행예정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감지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운행예정구역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
	다) 운행예정구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전방, 측방 및 후방에 존재하는 다른 도로이용자(성능인증 받은 감지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정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
	라) 운행예정구역에 설치된 모든 신호기를 식별하고 대응할 것
	마) 차로유지기능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운행예정구역의 모든 차로에서 차로 이탈이 없을 것
	바)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로변경을 수행할 것
3) 통신 적합성	가)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나) 가)에 따른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신호는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통신지연은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다) 가)에 따른 장치와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통신방식, 주파수 및 송수신 메시지 형식이 상호 호환되도록 할 것
4) 정보제공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비상정지장치와 양방향 통신 장치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자율주행정보의 보관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저장한 계에 다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에 저장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성능인증·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다음에 따라 합산한다.

- 1) 2. 개별기준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 2) 2. 개별기준 바목부터 타목까지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적합성 승인의 취소인 경우(제2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운행정지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이상 처분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성능인증 취소		
나.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경고	성능인증 취소	
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3호	운행정지 15일	운행정지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라.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행 용도나 범위를 벗어나서 운행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4호	운행정지 15일	운행정지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마.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적합성 승인 취소		
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1호	적합성 승인 취소		
사. 법 제4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 제1항제2호	경고	성능인증 취소	
아.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 제2항제5호	운행정지 30일	운행정지 60일	적합성 승인 취소

자. 법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 제1항제2호	경고		성능인증 취소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6호	운행정지 15일	운행정지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비고 : “교통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안전관리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 보행자, 다른 자동차의 승객 등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고당 재산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u>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u>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u>법 제19조 및 법 제43조제1항-----</u> -----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5장 보칙</u>	<u>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u>
<u><신 설></u>	<u>적합성 승인 등</u>
	제36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이하 “성능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성능인증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실시한다. 1.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

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형식확인”이라 한다)

2.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

④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신청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확인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결과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형식확인을 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3항제1호의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가능영역의 확대
2.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변경(다만,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변경은 제외한다)
3. 자율주행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최고속도의 상향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변경신청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변경인증의 방법, 제출서류 보완요청,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변경인증”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신 설>

대한 형식확인을 하는 경우 성능인증 기준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한 형식확인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형식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38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제6호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서 사본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행계획서

가. 운행 목적

나. 운행 용도

다. 운행예정구역의 지리적·시간적 조건 및 기상·통신 환경 등을 고려한 운행 범위

라. 운행최고속도

마. 법 제43조에 따른 책무의 이행계획

바.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적합성 승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

2.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하려는 지역에서의 운행에 필요한 성능을 확인하는 현장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교통안전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가 별표 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4항제2호의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율주행자동차가 기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일 것

2.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가 같을 것

⑧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는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의 확대(지리적·시간적 조

건 및 기상·통신환경 등을 포함한다)

3.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최고속도의 상향 조정

4.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변경

5.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격 모니터링 장치의 변경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2. 제38조제7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

3.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그 밖에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합성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적

합성 승인 변경신청서”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승인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2. 제38조제7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

3. 신고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별표 6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적합성 승인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 설>

제40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하였을 경우(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율주

<신 설>

<신 설>

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고기록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보관)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42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운행 조치)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운행 조치를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것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 및 관계 자료의 숙지

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안전점검 및 정비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마.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
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다른 도
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
록 표시할 것

3.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
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
를 마련할 것(승객보호 조치
를 포함한다)

4.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
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사고 또는 위험 상
황이 발생한 경우 제3호의 비
상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
치할 것

5. 제4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즉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할 것

6.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
행자동차를 원격으로 모니터
링하고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
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를 구비할 것(안전관리자가
답승하지 않고 자율주행자동

<신 설>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한한
다)

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
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8.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
록된 정보의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9.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
이터 저장용량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보관할 것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
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
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
리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신 설>

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에 필요한 기술지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주행거리 이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치에 발생한 하자의 무상수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4.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점검, 정비,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및 기술지도
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 매뉴얼, 고장 진단기 및 제작 관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무상제공

제4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조치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신 설>

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
 2.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로 인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
-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는 경우

2.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경우

3.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장치의 변경으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47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변경 이후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2. 해당 변경 이후에도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할 것

3. 변경 전·후 해당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할 것

4. 해당 변경의 내용과 이력을 기록·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신 설>

훼손, 손실 및 위조·변조를 방지할 것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7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을 변경한 이력과 그 변경내용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은 변경하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고장상태, 운행가능영역 확인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자가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정기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제47조(전담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위

<신 설>

<신 설>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보칙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법 제52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제36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의 접수

2. 제36조제7항 및 제37조제7항에 따른 제원의 입력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변경신청서의 접수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신청서의 접수

	5. <u>제3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의 접수</u> 6. <u>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 검사의 신청 접수 및 검사의 실시</u> 7. <u>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 검사의 실시</u>
② <u>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③ <u>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u> 1. ~ 5. (생략)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u> <u>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영지구를 관할하는 시·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52조제2항</u>----- -- <u>제3항 각 호</u>-----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u>제3항에 따라 해당</u> ----- ----- ----- ----- -----. <u>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외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및 신고에 관한 사무</u> 7.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u> <u>제38조(규제의 재검토)</u>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제51조(규제의 재검토)</u> ----- ----- -----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u>	

<u><신 설></u>	<u>증 기준</u>
	8.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u>제6장 벌칙</u>	<u>승인의 기준</u>
<u><신 설></u>	<u><삭 제></u>
<u>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u>	<u>제7장 벌칙</u>
<u>44조제1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	<u>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u>
과기준은 <u>별표 5</u> 와 같다.	<u>55조제1항</u> -----
	----- <u>별표 8</u> 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49